



집합적 시장지배력(joint market dominant power) 개념의 발전과 Irish Sugar 사건의 의의

홍 명 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I. 서론

유럽 법원의 판결에 나타나고 있는 집합적 시장지배력(joint or collective) 개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EC조약 제82조의 규정 태도에 연원한다. 즉 동 조 본문은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의(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 개념은 유럽위원회(commission)의 결정과 유럽법원(ECJ)의 판결을 통하여 발전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개별사업자를 넘어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집합적인 대상으로 하여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 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개괄하고, 동 개념의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Irish Sugar 사건을 고찰한다. 동 사건은 수직적 관련성 하에 있는 사업자들 간에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수평적인 관련성에 기초하고 있었던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의 의미 있는 확대를 평가되는 것이다.

II.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의 발전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이 최초로 다루어진 것은 Societa Italiana Vetro v. Commission 사건이었다.¹⁾ 동 사건에서 판유리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세 사업자는 이탈리아 시장에서 합

1) Case T-68, 77 and 78/89(1992) ECR II-1403: 5 CMLR 302.

산하여 95%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위원회는 이들 세 사업자가 집합적인 지위에 기초하여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과 판매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당해 사업자들이 합산하여 관련시장에서 큰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들이 단일한 주체(single entity)로 행위할 경우에 집합적으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단일한 주체란 가격과 판매조건에 관하여 상호의존성을 드러내는 사업결정에 그리고 사업자들 사이에 생산과 관련한 구조적 관련성의 존재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 유럽1심법원(CFI)은 당해 사건에서 집합적 시장지배력의 존재를 위원회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 자체는 받아들였는데, 즉 “둘 이상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특정한 시장에서 경제적 관련성(economic links)에 의하여 통합되어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정이나 라이선스를 통하여 다른 경쟁자, 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우위를 얻게 됨으로써 집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다”³⁾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후에 이 사건의 1심법원에서 제시한 집합적 시장지배력의 개념요소로서, 경제적 관련성(economic links)의 의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기업결합 사건이었던 *Gencor v. Commission* 사건에서⁴⁾ 1심법원은 경제적 관련성(economic links)은 단지 구조적 관련성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약정이나 다른 법적인 관련성이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러한 관련성의 징표들은 경제적 분석, 특히 당해 시장의 구조적 분석에 기초하여 찾을 수 있음”을⁵⁾ 밝히고 있다. 이후 이러한 태도는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이었던 *Compagnie Maritime Belge v. Commission* 사건에서⁶⁾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EC조약 제82조에 근거하여 유럽 판례법상 발전하여 온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의 활용을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그것의 경쟁정책적 의미는 무엇보다 복잡 내지 과점시장에서 유력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을 적극적으로 원용할 경우에, 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병행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대한 입증 없이도, 집합적으로 파악된 시장지배력에 기초하여 남용성 판단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여진다. 갈수록 사업자들 사이에 공모의 입증이 곤란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과점시장의 유력한 규제수단으로의 통로를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 물론 반면에 지나친 개입으로서, 즉 거의 모든 과점시장에서의 행태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2) Albertina Albors-Llorens, *EC Competition Law and Policy*, William Publishing, 2002, 107면.

3) Case T-68, 77 and 78/89, para. 358.

4) Case T-102/96 (1999) ECR II-753; 4 CMLR 971.

5) Case T-102/96, para. 45.

6) Case C-395/96P [2000] ECR I-1365; 4 CMLR 1076.



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⁷⁾

III. 유럽법원의 Irish Sugar 판결의 의의

전술한 것처럼, 동 개념은 수직적 관련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⁸⁾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Irish Sugar 사건이⁹⁾ 유력하다. 즉 동 사건에서 법원은 집합적 시장지배력이 동일 시장 내의 수평적 관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와 사용자 또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경제적 관련성(economic links)에 기초하여 집합적 시장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건의 간략한 개요를 보면, 위원회는 1997년 5월 14일 아일랜드에서 사탕무의 유일한 가공업자이자 설탕의 주된 공급자였던 Irish Sugar plc.가 1985년부터 1995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1990년 이전에는 Irish Sugar plc.의 배급업자인 SDL(Sugar Distributors Limited) 또한 아일랜드에서의 소매용 그리고 산업용의 그레놀 설탕(granulated sugar) 시장에서 7건의 개별적 남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EC조약 제86조(현 8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과징금 8,800,000ECU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Irish Sugar plc.는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유럽1심법원(ECFI)에 제기하였고, 1999년 10월 7일 1심법원은 남용행위 중 일부만을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서 기각하고 전체적으로는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였으며, 과징금 액수는 7,883,326EUR로 감액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럽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유럽법원에서 Irish Sugar plc.에 의하여 제기된 항변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첫째, 위원회와 1심법원에서 행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이 상세한 분석 없이 명백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EC조약 제82조와 법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둘째,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Irish Sugar plc.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셋째, 집합적 시장지배력의 판단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¹⁰⁾ 유럽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이유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항변사유 중 기술적인 것에 해당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을 제외하고, 특히 세 번째 쟁점에 관한 논의는 수직적 관련성 하에서의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

7) Albertina Albers-Llorens, 주 2)의 책, 110면.
8) D. G. Goyder, EC Competition Law 4. ed., Oxford Univ. Press, 2003, 332-333면.
9) Case C-497/99R [2001] 5 CMLR 1082.
10) 위의 판결, para. 7.

목할 만한 판단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Irish Sugar plc.는 자신과 SDL이 동일한 시장에 있지 않다는 점에 기초하여 집합적 시장지배력을 부인하는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유럽법원은, Irish Sugar plc.가 SDL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SDL이 그의 거래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행함에 있어서 Irish Sugar plc.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SDL이 그의 거래상대방에게 한 행위를 Irish Sugar plc.의 경쟁사업자의 브랜드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는 공동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Irish Sugar plc.의 항변을 받아들지 않았다.¹¹⁾

또한 구조적인 분석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Irish Sugar plc. 측의 항변에 대하여,¹²⁾ 유럽법원은 집합적 시장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조적 분석은 불가피하다고 실시하였다. 특히 집합적 시장지배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자들이 그들의 경쟁자 내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enable them to act together independently of their competitors and their customers) 경제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¹³⁾

IV. 결론

특히 수직적 관계에서 집합적 시장지배력을 인정하는 사고는 이미 다른 규제산업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통신법 영역에서 제정된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두 시장 사이의 관련성에 의하여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써 사업자의 전체적인 지배력이 강화된다면, 특정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significant market power)는 인접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통신망과 통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¹⁴⁾

이상의 집합적 시장지배력 개념, 특히 수직적인 관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동 개념은 재벌에 의한 기업집단적 운영방식이 주를 이루고, 특정한 시장의 사업자가 단일한 경제주체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 기능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쟁저널**

11) 위의 판결, para. 36 - 38.

12) 위의 판결, para. 43.

13) 위의 판결, para. 46.

14) Joachim Scherer, "Die Umgestaltung des Europäischen und deutschen Telekommunikationsrechts durch das EU-Richtlinienpaket - Teil I", Kommunikation Recht Heft 6, 2002, 283면 이하 참조.